

충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 세칙

[제정 2013.2.22.]

개정 2014.11. 1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사회학과(이하 “학과”라고 한다)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논문제출자격)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, 학과에서 추가로 정한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.

1. (삭제 2014. 11. 1)

2. 대학원 워크샵에서 석사과정은 2회 이상, 박사과정은 3회 이상 공개발표를 하도록 하며,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논문연구계획 공개발표에서 논문지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. (개정 2014. 11. 1)

제4조(논문제출자격시험) ① 학위청구논문(이하 “논문”이라 한다)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사회학과 대학원 전공과목에 한하여 실시한다. 다만 타학과 혹은 타대학원에서 수강한 전공과목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교수회의 논의를 거쳐 여부를 결정한다.

③ 시험과목은 공통과목 2과목(이론, 방법론)과 학생이 기 수강한 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교과 담당 교수의 허가를 받아 결정하되, 석사학위과정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합해 총 3과목 이상으로, 박

사학위 과정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합해 총 4과목 이상으로 한다.(개정 2014.11.1.)

④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
⑤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위촉한다.

⑥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⑦ 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⑧ ⑦의 기준을 충족하여도 60점 미만을 획득한 과목이 있으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한다. (신설 2014.11.1)

⑨ ⑧의 사유로 불합격 처리된 자가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면서 지난 학기에 이미 합격한 과목을 선택할 경우 해당 과목은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. (신설 2014.11.1)

⑩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한다.

제5조(외국어능력 기준)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.

1. TEPS 476점 이상
 2. TOEIC 600점 이상
 3. TOEFL(CBT) 163점 이상
 4. TOEFL(iBT) 57점 이상
 5.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
- ②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6조 (논문지도위원회) ① 석·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.(개정 2014.11.1)

② 학과 주임교수는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 한다.(개정 2014.11.1)

③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학과 내의 모든 전임교수로 구성한다.
(개정 2014.11.1)

④ 석사학위과정 학생과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,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.(개정 2014.11.1)

제7조(대학원 워크숍) ① 대학원 워크숍은 학생들의 학위논문 조기 준비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한다.

② 대학원 워크숍은 모든 전임교수 및 석·박사과정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제3조 2.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모든 학생이 졸업논문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.(개정 2014.11.1)

③ 대학원 워크숍은 연 1회 개최하며, 그 시기는 하계방학 기간중으로 한다.

④ 석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워크숍 2회 발표와, 박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워크숍 3회 발표는 논문연구계획 공개발표를 대신한다.(개정 2014.11.1)

제8조(학술지게재 의무조건) 박사학위과정은 학진등재후보 국내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.

1.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한다.

2.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.

3.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포함하여 최근 10개 학기의 실적만 인정한다.

제9조(시행세칙의 개정)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시행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4.11.1.)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시행세칙은 2015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
하되, 논문제출자격시험에 대한 사항은 2015년 1학기 응시자부터
적용한다.